제294회 정례회 2010, 9, 15.

전문위원 검토보고

O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정책복지위원회수 석전문위원

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광수 의원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 : 2010년 9월 8일

○ 회부일자 : 2010년 9월 14일

3. 제안이유

○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 공유와 출산 대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출산·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함으로 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출산장려 시책을 위한 5년 주기 종합계획 수립과 연도별 저출산·고 령 사회 계획의 수립 시행(안 제5조, 제6조)
 -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출산장려와 양육에 관한 지원대상(안 제7조)
 - 출산장려와 양육에 관한 자치단체별 지원금 분담, 충북도가 40%, 시군이 60% 부담(안 제8조)
 - 두자녀 이상 가정을 우대하기 위한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혜택 부여(안 제11조)

- 출산과 가족의 중요성 고취와 출산장려에 따른 도민의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한 출산장려의 날 운영(안 제12조)
- 출산장려 관련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의 행정적 지원(안 제13조)
- 저출산 대책관련 중요사항 심의를 위한 충청북도 저출산 대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・기능・운영(안 제15조 내지 제18조)

5. 검토의견

가. 제정 동기

○ 동 조례안은 지난해 교육사회위원회 의원들의 의정 학술연구용역 사업인 '저출산의 사회문제에 대한 사회구조적 분석과 해결방안 연구보고서'에 따라 저출산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를 해소하고자 의원이 발의하여 제정하게 된 것임.

나. 충청북도의 시행여부

- 충청북도는 동 조례안의 일부 시행여부와 관련하여 지난 2007년 1월 1일부터 '출산장려금 지급기준'을 마련하여 둘째아와 셋째아 이상 출산 시·도비를 계상,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음
- 또한, 시군은 출산 축하금을 비롯한 출산용품 등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음
 - ※ 보육 지원은 부모가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 자녀에 한하여 국가가 50%, 도ㆍ시군이 50%를 계상하여 지원하고 있음

다. 출산장려의 날 지정 운영

- 7월 11일 출산장려의 날 지정 운영은, 현재 의원발의로 「저출산. 고령사회기본법,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임.
- ※ 7월 11일 의미 : 1987년 7월 11일 세계인구가 50억 명이 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국제 연합이 지정한 기념일로서, 인류가 장차 직면하게 될 심각한 사태에 대비하여

세계규모의 인구전략을 모색하는 연구가 이 날을 기해 발표되기도 하였음.

라. 검토 결과

○ 동 제정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전 세계적으로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사회적 문제는 물론 국가적 경쟁력이 약화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를 극복하고자 지난 2005년 5월 18일 「저출산.고령사회기본법」을 제정하여 적극 추진 중에 있는 것임

※ 우리나라 출산율 변화 추이

- '81년(2.57명), '98년(1.45명), '05년(1.08명), '06년(1.12명), '07년(1.25명), '08년(1.19명)
- 이러한 정부의 대응추세와 세계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, 저출산 문제는 중앙정부의 몫으로만 돌리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자치단체 에서도 어느 정도의 책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
- 따라서, 광역 자치단체에서도 11개 시도가 조례를 제정하여 자체 재원을 부담, 출산장려 관련 지원금 및 축하품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도의 경우, 동 조례안의 제정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, 출산장려 지원 정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됨
- 다만, 일부 시군의 경우 자체적 제도를 마련, 시행중에 있으므로 부담기준 등 일부 혼선이 예상되는 부분과 중복 지원되는 부분 등에 관해서는 철저한 자료 조사를 통해 지원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
- 그리고, 출산 장려 정책의 성공적 추진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책 마련과 자치단체의 다각적인 재원 확보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